

1. 개정 이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천법」 제5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위한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권리의무승계의 신고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을 하천법 개정내용에 맞게 ‘즉시’에서 ‘7일’로 현행화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천법」 (법률 제17732호, 2021.1.23., 일부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10. 15. ~ 1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환경부령 제 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7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행

[별지 제1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생략)	
피승계인 (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생략)	
승계 대상물 (허가권 및 허가번호)		
하천의 명칭 및 위치		
권리·의무의 내용		
승계 사유 (상속·양도·합병)		

「하천법」 제5조제2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홍수통제소장 귀하

첨부서류	(생략)	수수로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현행과 같음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승계인 (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생략)	
피승계인 (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생략)	
승계 대상물 (허가권 및 허가번호)		
하천의 명칭 및 위치		
권리·의무의 내용		
승계 사유 (상속·양도·합병)		

「하천법」 제5조제2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홍수통제소장 귀하

첨부서류	(생략)	수수로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